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 일시_2015. 6. 25.(목) 14:00
- 장소_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 주최_국가인권위원회

진행순서

시간	내 용
13:40~14:00 (20분)	등록
14:00~14:10 (10분)	○ 진행 안내 및 개회: 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사회: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14:10~14:30 (20분)	○ 발표1: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및 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박병진 한양대학교 사회학 박사)
14:30~14:50 (20분)	○ 발표2: 교수·강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해외 사례 (김영중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14:50~15:10 (20분)	○ 발표3: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의 의의와 발전 방향 (유성상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15:10~15:20 (10분)	휴 식
15:20~16:05 (45분)	○ 토론1: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2: 나달숙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 토론3: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16:05~16:20 (15분)	종합 토론
16:20~ 16:30	폐회 및 정리

C · O · N · T · E · N · T · S

2014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1

- **발표1:**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및 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박 병 진 한양대학교 사회학 박사)
- **발표2:** 교수·강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해외 사례
(김 영 중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 **발표3:**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의 의의와 발전 방향
(유 성 상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문 37

- **토론1:** 임 재 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39
- **토론2:** 나 달 숙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45
- **토론3:** 조 난 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51

발 표

2014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박병진 · 김영중 · 유성상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¹⁾

- 2014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유성상*, 박병진**, 김영중***

1. 들어가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인권은 보편성을 띠고 있다. 한편 인권교육도 전 연령과 전 사회에 걸친 중요한 주제로서 보편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 인권교육의 보편성에 비해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연구방향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식제고의 측면에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다.

인권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입시체계 내에서 각 교과과정과 교과서 내의 인권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 또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연구가 적었다.

하지만 최근의 군대나, 경찰, 의료기관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사고가 인권교육과 무관하지 않으며, 군에 입대하는 연령층의 대다수가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 졸업 후에 해당하는 층이라는 점, 경찰이나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들 역시 대학을 거쳐서 자기 직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박사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법학 박사

1) 본 발제문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2014.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임.

서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환경은 교수,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측면과 사회로 나가는 관문의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한편 유엔에서는 제2차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교육체계내에서의 인권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대학 내의 인권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는 대학의 인권과목 개설현황 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 대학(원)생 인권교육 설문조사 및 인권과목 교·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한 인권교육 발전방향 도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1. 조사 대상 인권교과목 대상 한정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과목의 개념을 대학에 개설된 교과과정 중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인권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보편적 인권교육은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의미하며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과 구분된다. ‘보편적’이란 인권의 발달에 관한 기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논쟁(철학적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정치현실주의)과는 무관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의의, 인권의 내용, 인권신장을 위한 참여의 필요성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목의 제목을 통한 1차 분류와 함께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지침으로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목을 통해 인권과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사과목들에 대해서는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권 교과목 여부를 확인하였다. 완전히 인권과목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 일부 과목들(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된 강의나 학습내용이 2주 내외

로 포함된 강의 등)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인권 교과목과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인권 교과목’은 최소한 7주이상의 기간에 걸쳐 그 교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권 지식(인권의 세부 내용과 인권의 발달과정 및 인권조직 등),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경험적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2. 인권교과목 개설현황 조사 개요

인권교과목 개설현황에 대한 조사는 2014. 5. 12 ~ 5. 23 (1차 조사), 5. 26 ~ 6. 3 (2차 조사)를 기간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학교의 숫자와 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서면조사(전자공문)를 택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총 365개로 하였다.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의 표본을 보면 조사대상 대학이 총 432개교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인권교육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67개 대학을 제외한 365개 대학을 조사대상대학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인권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가. 교과목에 ‘인권’이나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
예시) 기본권론, 현대사회와 인권 등
- 나. ‘평화’, ‘NGO’, ‘시민사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
예시) 시민사회론 등
- 다.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관련된 교과목
예시) 장애인복지론 등

각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하여 교과목 리스트를 수집한 결과, 총 6,654개의 교과목이 수집되어 1차적으로 교과목명을 기준으로 인권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제외한 2,787개의 과목을 선정하였다. 이 과목에 대하여 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일일이 대조하고 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강대학의 동일과목 혹은 유사과목의 수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083개의 과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 인권과목과 인권관련 과목의 확인

총 1,058개의 강의계획서(이중에는 104개의 매우 양호하지 않은 계획서도 포함)와 명시된 교과목명을 중심으로 ‘인권 과목’과 ‘인권관련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강의계획서가 완비된 교과목을 일일이 대조해본 결과, “00 인권”, “인권과 00” 식의 교과목명을 가진 과목은 거의 대부분 ‘인권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시한 모든 과목은 우선 크게 ① 일반인권/사회 관련 ② 법/범죄 관련 ③ 여성 관련 ④ 다문화/소수자 관련 ⑤ 평화/전쟁/정치 관련 ⑥ 사회복지 관련 과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2주 이상 포함된 과목을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인권 교과목’은 ‘인권관련 교과목’ 중 교과목 이름이 ‘00 인권’과 같은 것으로 전체가 인권 내용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을 포함하고, 인권 관련 내용이 절반(7주) 이상인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한편, 강의계획서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론 등과 같이 시민사회와 인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과목들은 최초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권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강의계획서에 2주 혹은 7주 이상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각각 ‘인권 관련 과목’, ‘인권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와 윤리문제’와 같은 외형상 ‘인권 관련 과목’처럼 보이는 과목들도 인권과는 무관한 경우가 있었다.

280개의 ‘여성학’관련 과목에서 160개 과목은 강의계획서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강의 내용들이 매우 유사하였다.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강의 내용들은 주로 성에 따른 차별/차이, 성문화, 성희롱, 성폭력, 노동불평등, 결혼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인권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반면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에서는 대부분의 강의들이 소수자와 관련된 일반 복지 이론 및 방법론, 요양 산업 관련 등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해당과목들은 ‘인권 과목’ 또는 ‘인권 관련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 부류에서 제외하였다.

[표 1] 개설 인권 관련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분류

연번	영역	인권 및 인권관련 과목
1	인권일반·사회	인권의 이해, 현대사회와 인권, 인권사회학,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환경과 인권, 시민사회와 NGO, 사회계층과 불평등, 인권과 교육, 인권과 NGO, 기타 인권
2	법·범죄	법과 인권, 국제인권법, 기본권론, 헌법, 노동법, 범죄와 인권, 이민법과 인권, 공익인권법, 피해자학,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군인/경찰/검찰, 사회보장법, 시민사회와 법, 기타 관련과목
3	여성	여성학, 법여성학, 현대사회와 여성, 여성과 인권, 기타 여성관련 과목
4	다문화·소수자	다문화사회의 이해, 국제이주와 난민, 북한사회와 탈북자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와 차별 탐구, 노인문제연구, 기타 다문화 과목
5	평화·전쟁·정치	인권과 국제정치, 전쟁과 평화,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시민정치론
6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노인복지론, 다문화복지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노동복지정책론, 사회문제론,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이해, 교정복지론, 교육복지론

4. 조사결과

1) 조사대상 대학의 회수율

먼저 조사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대학 중 개설과목을 통보해준 대학의 비율을 회수율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총 365개 대학 중 307개 대학이 회신하였는데 그 회수율은 84%이다. 물론 각 대학의 모든 인권 혹은 인권관련과목에 대한 명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회수율이 응답대학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답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표 2]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서 회수율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소계	종합 대학	교육 대학	방송 통신 대학	전문 대학	특수 대학	특별법 법인	소계	종합 대학	전문 대학	산업 대학	사이버 대학
대상대학	365	59	32	10	1	9	6	1	306	155	130	2	19
회신대학	307	56	31	10	1	9	5	0	251	128	105	0	18
회수율	84%	95%	97%	100%	100%	100%	83%	0%	82%	83%	81%	0%	95%

2)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을 통해볼 때, 응답대학 중 이 교과목을 최소 하나 이상 개설한 비율은 57%이며, 개설 학교당 평균 6.22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표 3]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회신대학	307	56	251
개설학교	174	42	132
개설비율	57%	75%	53%
개설교과목 수	1,083	339	744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	6.22	8.07	5.64

개설과목을 6개의 대분류와 59개의 소분류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학문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 관련 226과목, 법·범죄 관련 218과목, 사회복지 관련 217 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174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139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109과목 순으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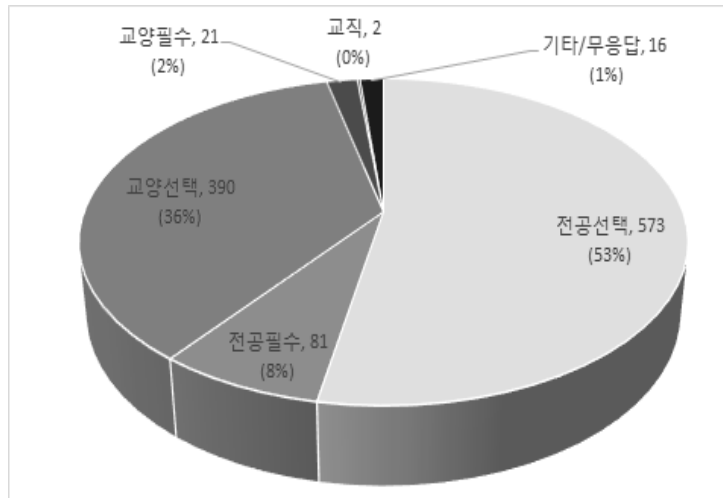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을 대학/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대학(학부과정) 835과목, 대학원(석·박사 과정) 248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은 ‘인권 관련 교과목’ 중 여성 관련 과목(24%), 대학원은 법·범죄 관련 과목(3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경영계열	3 (0%)	0 (0%)	3 (0%)
교육/사범계열	75 (7%)	53 (16%)	22 (3%)
기타	34 (3%)	6 (2%)	28 (4%)
법학계열	234 (22%)	97 (29%)	137 (18%)
사회계열	449 (41%)	130 (38%)	319 (43%)
신학계열	4 (0%)	0 (0%)	4 (1%)
예체능계열	7 (1%)	4 (1%)	3 (0%)
의약/간호계열	26 (2%)	1 (0%)	25 (3%)
인문계열	20 (2%)	10 (3%)	10 (1%)
교양	231 (21%)	38 (11%)	193 (26%)
계	1,083 (100%)	339 (100%)	7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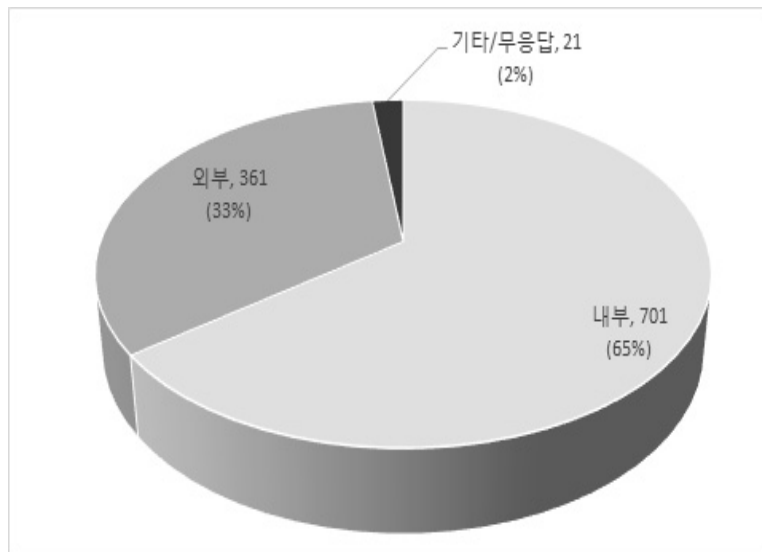
교과목 성격별로 분류해 본 바에 의하면, 전공선택 53%, 전공필수 8%, 교양선택 36%, 교양필수 2%, 기타 및 무응답 1%로 선택교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 인권 관련 과목 성격별 현황



인권 관련 교과목의 교·강사는 학교 내부 65%, 학교 외부 33%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인권 관련 교과목의 교·강사 현황



3)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응답대학의 31%이며, 개설 학교당 평균 6.60개의 교과목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전체 응답대학교로 환산하면, 평균 2.08개에 불과하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과목이 겨우 2개에 불과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체 조사대학 365개를 고려할 경우 인권과목 개설수는 1.74개로 급감함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1.70과목이며 국공립대학은 이보다 조금 많은 3.83과목으로 나타났다. 전국대학 평균 2과목 미만의 인권과목 개설수와 강좌 당 평균 25명의 수강학생수를 고려해볼 경우, 이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의 인권교육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표 5]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회신대학	305	54	251
개설학교	96	24	72
개설비율	31%	44%	29%
개설과목 수	634	207	427
개설대학별 과목 수	6.60	8.63	5.93
대학별 개설과목 수	2.07	3.83	1.70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을 59개 세부 학문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법·범죄 관련 160과목, 사회복지 관련 116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109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105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82과목, 여성 관련 62과목 순으로 ‘인권 교과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은 대학(학부과정) 471과목, 대학원(석·박사 과정) 163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은 사회복지 관련 및 법·범죄

관련 과목의 개설 비율(21%)이 높고, 대학원은 법·범죄 관련 과목(38%)의 개설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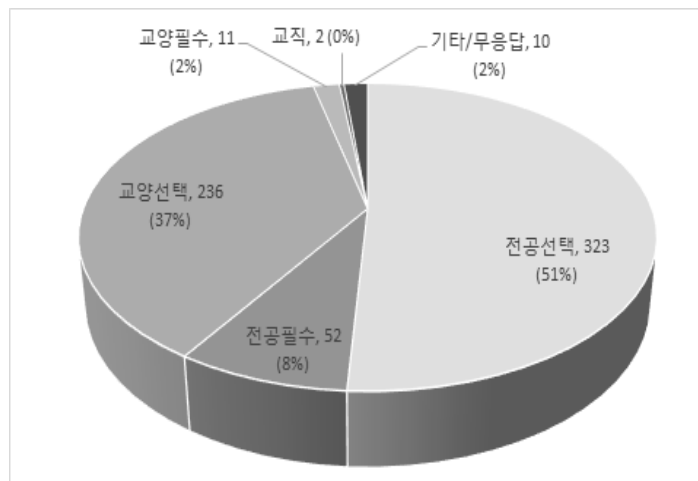
전공별로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은 사회계열 211과목, 법학계열 186과목, 교양 교과 119과목, 교육/사범계열 56과목, 기타 계열 24과목, 의약/간호계열 18과목, 인문계열 14과목, 신학계열 3과목, 예체능계열 2과목, 경영계열 1과목 등 사회계열(33%)과 법학계열(29%)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비중이 가장 높다.

[표 6]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경영계열	1 (0%)	0 (0%)	1 (0%)
교육/사범계열	56 (9%)	38 (18%)	18 (4%)
기타	24 (4%)	4 (2%)	20 (5%)
법학계열	186 (29%)	81 (39%)	105 (25%)
사회계열	211 (33%)	57 (28%)	154 (36%)
신학계열	3 (0%)	0 (0%)	3 (1%)
예체능계열	2 (0%)	1 (0%)	1 (0%)
의약/간호계열	18 (3%)	0 (0%)	18 (4%)
인문계열	14 (2%)	8 (4%)	6 (1%)
교양	119 (19%)	18 (9%)	101 (24%)
계	634 (100%)	207 (100%)	427 (100%)

인권교과목을 성격별로 분류해 본 바에 의하면, 전공선택 51%, 전공필수 8%, 교양선택 37%, 교양필수 2%, 교직이수 0%, 기타 및 무응답 2%로 선택교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 인권 교과목 성격별 현황



4) 인권관련 교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 현황 분석

1차 조사(5. 12 ~ 5. 23) 및 2차 조사(5. 26 ~ 6. 3)에서 조사에 회신한 307개 대학에서 제출한 ‘인권 관련 교과목’은 총 6,654 과목이다. 이 중 대학에서 제출한 인권 관련 교과목 목록과 강의계획서 검토를 통해 5,571과목을 인권과 무관한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7] 인권 관련 교과목 조사에서 제외된 교과목 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회신대학	307	56	251
제출한 교과목 수	6,654	1,183	5,471
인권 관련 교과목 수	1,083	339	744
제외된 교과목 수	5,571	844	4,727
제출한 교과목 중 제외된 교과목의 비중	84%	71%	86%

대학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판단했지만 분석에서 제외된 교과목들은 크게 ①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련 ② 법 및 정책 관련 ③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관련 ④ 사회복지 관련 ⑤ 상담 및 심리 관련 ⑥ 연구방법, 교수법 및 실습 관련 ⑦ 전공 일반 관련 ⑧ 정치, 시민사회 및 국제관계 관련 ⑨ 젠더 및 가족 관련 ⑩ 종교 및 선교 관련 ⑪ 철학 및 윤리 일반 관련 ⑫ 특수 및 교육 일반 관련 ⑬ 기타 과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8] 인권 관련 교과목 조사에서 제외된 교과목의 영역별 분류

연번	영역	교과목 예시
1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영미청소년문학, 청소년문학, 여성의 삶과 미술, 아동미술
2	법 및 정책	민법총칙, 소비자보호와 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3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노인신체건강, 다문화간호, 아동발달, 노인케어학, 여성과 몸
4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장애인의 이해, 노인복지론, 케어복지론
5	상담 및 심리	상담이론과 실제, 청소년심리학, 아동심리 및 상담, 노인상담
6	연구방법, 교수법 및 실습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상급노인간호학실습
7	전공 일반	사회학개론, 다문화사회의 이해, 미래사회의 이해
8	정치, 시민사회 및 국제관계	NGO 전략경영, 민주주의와 선거, 시민교육, 비영리조직론
9	젠더 및 가족	여성과 사회, 가족과 젠더, 행복한 삶과 가족, 여성과 일
10	종교 및 선교	청소년치유사역, 기독교여성사, 목회윤리, 청소년설교
11	철학 및 윤리 일반	인간관계론, 현대사회와 윤리, 인간의 가치탐색, 간호윤리
12	특수 및 교육 일반	여성교육론, 청소년발달, 청각장애아교육, 특수아교육
13	기타	여성과 리더십, 청소년 리더십, 여성과 IT, 여성커리어개발

분석에서 제외된 교과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 1,929과목, 특수 및 교육 일반 관련 1,258과목,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관련 754과목, 연구방법·교수법 및 실습 관련 361과목, 상담 및 심리 관련 278과목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 관련 내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수업은 모두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인식하는 대학들의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권 교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3-2014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을 2011년과 단순 비교하면, 개설대학의 비율이 14%(43%→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과목 수는 558개(525개→1,083개) 증가하였고,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도 2.25개(3.97개→6.2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2012, 2013-2014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비교

구분	2012년	2013-2014	증감
개설대학 비율	43%	57%	△14%
교과목 수	525개	1,083개	558개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	3.97개	6.22개	2.25개

Ⅲ.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대학의 인권과목 실태뿐만 아니라 인권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어진 연구기간 내에 일종의 예비조사적 성격을 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하였다. 시간과 재원의 한계로 서울에 소재한 대표적인 대학들을 편의표집하고 비교목적 상 인권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과 타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진행된 설문조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본: 서울 소재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및 대학원생 621명에 대한 편의표집
- 조사기간: 2014년 5월 15일- 6월 11일

최종 응답자 621명 중 남학생이 42.6%이고 여학생이 55.4%였으며, 대학생이 89.4% 그리고 대학원생이 6.6%였다. 각 학년별 비율도 거의 유사하게 분포되어있으며, 군역을 필한 비율이 30%에 해당하였다. 연령의 분포는 19세에서 29세까지가 95%이고 30세 이상이 약 5%였다. 국공립대학에 재학하는 비율이 12.8%이고 사립대학에 재학비율이 87.2%로 나타났다. 무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대학의 구성요소들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결과 분석

1) 인권지식 및 의식 / 태도와 행동 / 침해 경험

최종적으로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참여의 증진을 통해 인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의 참여태도와 참여행동의 고취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의 인권지식 및 의식,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인권경험(침해와 차별과 같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권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을 부분적으로나마 읽어 본 학생은 59.6%이나 전혀 읽어보지 않은 학생도 40여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헌법의 인권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정도 되지만, 헌법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비율도 20%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인권존중 상태는 존중(29.5)보다 존중되지 않음(33.4%)로 높게 인식되고 있다. 끝으로 해당대학의 인권존중 상태는 존중이 39.9%로 존중되지 않음(15.6%)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 내에서 심각한 차별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다른 사항보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로부터는 성적과 성별에 의한 차별을 약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회 간부로부터의 차별(19.6%)로 상대적으로 높다. 나이에 의한 차별이 16.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른 요인에 비하여 의견표현의 자유(22.1%)나 의견묵살의 경험(24.3%)은 약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의 실태를 대학 이전과 현재 대학에서 교육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대학 전 인권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2.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전 인권교육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72%) 진행되어 다른 인권기관으로부터의 교육은 상당히 없는 편이다.

3) 인권관련 강의 수강 실태

학생 개인수준에서의 인권과목의 수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과목 이하가 45.4%로 절반 정도 되었고 2-3과목이 22.9%로 나타났다. 평균 2과목 정도를 수강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다수가 현재 인권과목을 수강한 학생임을 고려할 때, 수강과목의 수는 결코 많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수강이유 중 개인적 관심때문(22.1%) > 수강신청의 편의(20.2%) > 필수이기 때문에 (17.0%)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강했던 과목을 영역별 분포(복수응답)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일반: 424과목(현대사회와 인권이 89과목으로 최다)

법, 범죄, 경찰: 450과목(헌법이 138과목으로 최다)

정치, 국제, 평화: 85과목

다문화: 72과목(다문화사회의 이해가 49과목으로 최다)

여성학: 216과목(여성학이 164과목으로 최다)

사회복지: 164과목

4) 인권 관련 강의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포함되는 내용 중 일부 순서를 살펴보면, 남녀평등 (50.2%) > 법 앞의 평등(42.4%) > 소수자의 권리(36%) > 표현의 자유(36%) > 생명권 차별금지(33.6%)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치·신체적 권리에 비하여 사회경제권의 내용이 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강의에 꼭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순서는 소수자의 권리(32%) > 표현의 자유(30.8%) > 법앞의 평등, 프라이버시의 보호(각 28.2%)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27.8%) > 사회적 약자보호와 민주주의(27.4%) 등 이다.

강의에 활용된 방법은 다양하나 효과적이라고 답한 방법은 관련동영상 시청(22.2%) > 강의(21.8%) > 관련인물 초청(17.2%) > 팀프로젝트 발표(13.7%) > 현장학습(12.3%) > 세미나식(7.4%)이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강사의 수는 1인이 다수(71.5%)이다.

교수·강사의 교과내용에 대한 숙지 정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가 74.8%이고 ‘그렇지 않다’가 1.1%라고 응답하였다. 강의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7.8%가 긍정적으로, 1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이 34.4%, 부정적인 평가가 11%로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중간 및 기말시험이 77%로 압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팀프로젝트가 응답자의 47%, 그리고 보고서가 44.6%, 토론참여가 21%로 활용되고 있다.

5) 교육 효과

인권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강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강의를 통한 효과는 인권내용의 숙지와 인권의식의 향상 그리고 인권존중의식 등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의를 들은 후에 인권관련 행동에의 참여 역시 약간이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 참여보다는 관여의 깊이가 낮은 행동부터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46.6%이고 불만족도는 3.9%이다.

6) 기타, 개선사항

인권강의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인권관련 강의의 수강신청의 용이함에 대해서는 53.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이다. 인권강의를 더 수강할 계획에 대해서는 44.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이다.

강의 방식에 대해서는 교양강좌로 강의의 수를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인권관련 전공강의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이 43.4%, 반대가 15.4%였다. 정규교과 이외의 인권강좌의 확대에도 55.8%의 찬성을 보여 인권강좌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Ⅳ.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교·강사 대상 인권교육 설문조사는 현재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는 인권교육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했던 교수 및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수나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생에 대한 조사와는 달리 공급자로서 교수 혹은 강사가 인권교육에서 느끼는 점 혹은 인권교육을 한 경우 그 실태에 대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조사와는 다소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교수나 강사는 인권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권교육의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토대로 문제점이나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설문조사는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수나 강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한 번이라도 개설하고 강의한 교수나 강사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관련 강의로 법, 복지, 청소년, 노인, 인권일반 등으로 구분하였다.

교·강사 대상 인권교육 설문조사는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들의 개설과목, 강의방식, 평가방식, 그리고 강의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이메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설문지 내용은 부록2 참조). 설문은 선택지 중에 1개 혹은 여러 개의 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형과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서술형의 질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괄호에 기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교수

· 강사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기 중에 연구과제가 시작되어서 대상자 섭외에 애로점이 있었다.

본 설문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의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였고, 그 과목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평가하였는지 이다. 두 번째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데 어려운 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대학, 국가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세분화 하였다. 특히 인권교과목 강의 관련 애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관련 교·강사들의 보다 풍부하고 세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2.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은 국내 대학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과목을 3년 내에 1과목 이상 강의한 교수나 강사 35명으로 하였다. 이메일 조사나 전화 조사를 통해 설문에 의미 있는 응답을 한 인원은 총 30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5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응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표시하였다. 이 5명 중에는 대학에서는 인권관련 강의를 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답장으로 그러한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성별 분포로 보면 응답자 30명 중 17명은 남성, 13명은 여성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4명, 50대가 9명, 40대가 11명, 30대가 6명이었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10명, 가톨릭이 7명, 불교가 3명, 없음 9명, 기타 1명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54%를 차지하였다. 계열별로는 법학계열이 14명, 사회계열이 13명, 인문계열 2명, 교육/사범계열이 1명으로 법학계열과 사회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의한 대학교의 유형으로는 4년제 일반대학이 27명, 교육대학이 1명, 신학대학 2명으로 4년제 일반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의를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강의한 대학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서울에 11곳, 경기도에 4곳, 충청북도에 1곳, 충청남도에 1곳, 강원도에 2곳, 경상북도에 1곳, 경상남도에 1곳, 전라북도에 2곳, 전라남도에 1곳, 대전에 4곳, 광주에 1곳, 울산에 1곳이 위치하고 있었다.

2) 인권관련 강의 경험 및 개설 강의명, 인권관련 내용 포함 주수

대학 내에 인권관련 강의가 얼마나 개설되고 있는지와 연관하여 위 강사들이 3년 내에 몇 차례나 인권관련 강의를 맡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회 이상이 12명, 3회가 5명, 2회가 4명, 1회가 9명으로 대학의 특성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개설빈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인권관련 특성화 대학에 재직 중인 응답자의 경우 인권관련 강의 개설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학과(예를 들어 사회과 교육과,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도 개설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각 1회)가 일부 있었다. 물론 대학 본부나 학과 등에서 조사결과 보내 준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복지와 관련한 학과의 경우에는 노인과 복지와 같은 과목을 인권과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3) 인권관련 강의에 포함된 내용

국제법에 규정된 인권목록을 토대로 조사대상자에게 인권관련 강의에 포함되었던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개설된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인권교과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국제인권법이나 인권사상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강의를 개설한 교수의 경우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 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공평한 재판권, 무죄추정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거주, 이전의 자유, 결혼 및 가족구성권, 가족의 보호 및 지원,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참여권리,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3권, 교육권, 아동보호, 난민지위,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생존권,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권 등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과목 내에 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한 과목에 속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인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주제를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경찰분야에서 인권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한 경우에는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공평한 재판권, 무죄추정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거주, 이전의 자유,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3권, 교육권, 아동보호,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생존권,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목 내 내용은 대체적으로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권리들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대학에서 사회과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의 경우에는 인권관련 내용을 일부로 한정하여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즉 위 과목 담당 교수는 자유와 개인의 안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보호, 결혼 및 가족구성권,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보호, 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개설된 과목 내에 인권관련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목의 경우에는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교사 양성의 시각에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과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목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 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무죄추정원칙,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참여권리,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3권, 교육권,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환경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가 포함되었으며, 특별히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안전권도 그 내용에 포함시켰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법적구제, 사회보장권, 교육권, 아동보호, 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등의 내용이 인권과 관련하여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만 국제법에 규정된 인권목록과 그 명칭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4) 강의 방식과 교재, 평가방법

조사 응답자 중 일부 몇몇 교수와 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의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관련동영상 시청, 현장학습, 팀프로젝트와 발표, 세미나, 관련인물 초청 등을 가미한 경우, 팀프로젝트와 발표만을 가미한 경우, 관련 동영상 시청 및 팀프로젝트와 발표를 가미한 경우, 관련인물초청만을 가미한 경우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세미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에서 활용된 교재로는 저서 및 논문, 정부자료, 신문 및 방송, 시민단체 자료,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이 있었다.

5) 인권관련 교과목 강의시 어려움

설문 응답자 중 50%(15명)가 학교나 시민단체 지원 부족 등으로 현장학습이 어렵다는 점을 인권관련 과목 강의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었다. 또한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문제로서 수강인원이 너무 많거나 강의실이 너무 좁다는 점을 든 경우(12명)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교과목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도 보였으며, 테이퍼베이스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강의주제와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등을 의견으로 준 경우도 보였다.

6) 대학 내 인권과 관련한 강의나 프로그램 추가 개설 필요성

설문 응답자 중 23명(75%)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관련 교과목의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특별히 교육대학에서의 인권과목 추가 개설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보였다.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7)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으로 설문 응답자 대부분은 인권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거나 혹은 과목개설을 확대하는 등 인권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학생들에게 듣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학에서 교과목 개설과 함께 재정적 혹은 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이나 인권위, 교과부 등에서 외부강사 초청에 필요한 강사료 등 재정적 지원, 토론식 수업에 필요한 자재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 들은 국가정책적으로 대학교육에서 인권교과목 개설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높음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인권이 시민사회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한 경우, 취업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되었다. 인권교육법의 제정 자체를 촉구하는 의견,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으로 우선 응답자 중 대다수는 대학이 인권교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권고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별히 공모제 등을 통한 인권에 대한 관심확대나 홍보를 강조한 경우나 인권교재 개발 등을 통한 지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강사의 경험이나 인권교육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응답자 들은 교과목의 확대와 의무화, 비용지원, 교재 지원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V. 인권교육 관련 해외사례

1. 시카고 대학의 인권관련 교과목 및 프로그램²⁾

시카고대학의 인권프로그램은 현세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인간의 존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인권교과과정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학제간 관심사를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카고 대학의 인권프로그램 과정은 인권을 다양한 규정, 주제 및 지역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인권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국내 또는 국외의 주요 기관들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은 세미나, 워크샵, 강의, 영상물을 통해 교육적으로 캠퍼스와 더 넓은 커뮤니티 간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http://collegecatalog.uchicago.edu/thecollege/humanrights/>

시카고 대학의 인권인턴쉽프로그램은 시카고대학의 학생들이 현실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심사, 주제, 지역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하고 모든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직전 가을학기에 접수를 받아 진행되며 현재는 여름학기마다 각각 3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해외인권기구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대학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인권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제, 역사, 비교적인 관점에서 인권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전공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함. 소규모 인권과정은 졸업생들이 인권보호를 위한 직업(예를 들면 방송, 영화제작, 법률가, 의료분야, 교사, 정책분석가, 정부 또는 정부간 기구에 종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과목은 각 국가들과 국제 사회가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데 취한 서로 다른 접근방법과 이전의 독재국가가 민주주의·법치국가를 근간으로 한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기타 과정 및 인권센터의 역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인권정책 카 센터에는 대형참사대응실무 프로젝트, 인신매매와 현대 노예제도, 젠더, 물과 위생, 과거사 정리, 교육,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³⁾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임상실습과정은 학생들이 인권보호기관에서 인권변호사와 협업을 하거나 미국 내·외의 비정부기관에서 실무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의 실무수습을 하는 학생들은 1)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내안보, 2) 정보와 표현의 자유, 3) 성적인 차이에 기반하고 있는 폭력, 여성과 성적소수자의 권리, 4) 원주민의 권리, 5) 법적인 능력과 권한, 6) 교육권, 7)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 8) 입법개혁에 관한 권리, 9) 생명권과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10) 중동에서의 인권, 11) 국제형사재판과 관할, 1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3) <http://www.hks.harvard.edu/centers/carr/programs/human-rights-in-education>

13) 토지법과 주거의 자유, 14) 인권보호와 이행을 위한 이행적 정의(과거사)/책임, 15) 건강과 의료관련 권리, 16) 난민의 권리와 같은 분야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3. 미국 내 인권교육 네트워크

미국 인권교육자들의 모임(HRE USA)은 미국내 인권교육(HRE)의 광범위하고 열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간의 존엄,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HRE USA는 구성원이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대학, 기관 같은 공식 혹은 비공식 교육공간의 HRE로 통합하고, 2) 연방 혹은 주의 교육정책, 기준, 과정, 학제에 HRE를 포함할 것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사전·재직중 교사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서비스와 HRE의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HRE의 매년 세미나에서는 주로 미국 내 인권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한다.

인권교육협회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있는 개인, 비정부기구, 정부간 기구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1) 과정 및 자료개발 보조, 2) 전문가그룹 훈련, 3) 교육훈련자료 정보제공, 4) 기타 관련 연구 및 평가, 5) 인권교육지킴이와 교육자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제공·수행하고 있다.

Ⅵ.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

1) 교양측면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향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인권교과목을 확대하고 교양 필수로 지정하는 등 대학생 전체가 인권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반교양에서는 인권의 역사, 범죄와 인권, 국가와 인권 등 사회 전반 혹은 인권 전반에 걸친 사항을 주로 내용으로 삼는 과목들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 인권관련 교과목의 수적인 증가도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과반수 정도는 인권관련 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본 연구진이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관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강사들도 역시 인권교육의 확대를 대학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시한다. 인권은 다양한 방면에 여러 부분에 걸쳐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다양성은 현재 대학의 인권교과목 개설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과 관련한 다방면의 과목개설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교양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전공측면에서도 요구된다.

2) 전공측면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은 대학생 전체가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권 중 특별한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분야에 진출할 대학생의 경우에는 노인의 처우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분야로 진출예정인 학생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나 범죄예방 등 경찰활동과 관련한 인권에 대해 교양측면에서의 일반적인 강좌에서 보다 상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분야와 관련된 인권강의의 개설은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에 있어서 예컨대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과 인권, 청소년과 인권, 복지와 인권 등의 과목이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와 인권, 인권교육방법론 등의 개설을 대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학 차원에서는 이러한 인권과목들이 자유롭게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본부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같이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인권관련 교과목 운영상 지원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인권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요소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다수가 수강하는 이론 강의와 소수가 참여하는 토론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물적인 설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시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인권교과목을 확대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정책적 측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권고 등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대학차원에서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수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확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권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나 강사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인권만을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뒷받침 되어야 인권 과목개설 혹은 신설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외부 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거나, 인권관련 교재나 자료의 제작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인권관련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지원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대학생의 인권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대학 차원에서 포스터 등을 통한 인권 홍보, 인권상담제도 개설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 등 인권존중문화가 교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인권과 관련된 강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 인권센터 건립 및 활성화를 통한 인권중심 대학 구축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 불과하다. 물론 이 대학의 인권센터는 학교 자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 상담 및 구제, 성폭력, 성희롱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나 인권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개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버드 대학의 카 센터의 경우에는 보다 더 다양한 프로젝트 또는 인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내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는 강좌 개설의 다양성을 위한 대학 본부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대형참사, 노예제도, 섹슈얼리티, 물과 위생, 과거사 정리, 교육, 라틴 아메리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학 차

원에서 센터에 대한 방대한 지원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 인권센터는 설치된 대학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뒷받침이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인권센터는 단순히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구 또는 상담기구의 수준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과목개설 여부를 협의하며, 교육방법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학 본부 자체에서 인권에 대해 관심과 물적, 인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각 대학이 인권센터가 대학의 인권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대학생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활동들은 인권허브로서 대학 내 인권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활동〉

○ 인권관련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이트 운영
- 성희롱 예방 교육 특강, 성평등 교육, 오프라인 성교육, 자기방어훈련 연극놀이를 통한 성평등 교육

○ 인권연구

- 2014 국제 인권동계강좌 “인권과 아시아” : 세미나형식과 강연, 소그룹 발표, 영화를 통한 인권쟁점 이해, 외국의 현지 활동가와의 국제 화상통화를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 열린 인권강좌 운영 : 국가와 인권, 빈곤과 인권, 시온주의와 인권, 노동과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가계 인사를 초청한 강의 운영
- 국제개발과 인권 프로그램 운영
-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저명인사 초청 등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 학내 인권의식 증진 활동

- 인권주간 운영을 통한 학내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진
- 인권연구 프로젝트 공모전 개최

2.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점

1)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법제화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은 국가나 사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역시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류지현/허창영: 177)

인권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배경내 2009: 96). 하지만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공식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육의 전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필수로 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이러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위 안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안 제4조), 대학교를 포함한 각 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

이러한 인권교육 관련 법률의 제정이 어렵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인권교육의 법제화가 가능하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7호, 2013.12.18.)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양성 추구로 두고 있으면서, 총론에서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6학년에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에 관련된 내용을, 4학년과 6학년에서 인권,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리 등의 용어 등을 포함시켜 인권교육의 내용을 일부 필수로 담고 있다. 중학교는 7학년 인권보호와 헌법, 10학년에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체계가 제시되어 근대국가의 통치권력의 근원이 되고 있는 헌법의 의미를 인권의식의 성장 측면에서 파악하게 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인권문제 성격을 파악하고 생활주변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허수미 2008: 154).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의무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2)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관련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중 하나로 인권과 관련한 강사를 초청한다거나 기관 등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부족함을 들고 있다. 사실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에 비해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인권관련 시설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지방의 대학생들이 현장 참관을 하는 데는 비용면에서 수도권 학생들보다 더 큰 부담이 된다.

인권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현장참관이나 인권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은 단순한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면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도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인권친화적 대학 교육정책 추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권과목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수나 학생 모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강좌는 개설되지 않거나 개설되더라도 소수의 과목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권의 권리로서의 중요성과 인권침해가 사회에서 갖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대학에서의 인권강의는 소수의 일반적인 강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대학의 인권교육은 대학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무화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인권관련 강좌는 다른 강좌와는 달리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제화를 통한 인권교육의 의무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대학평가시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여부를 반영하거나 인권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의 정책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간접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이 현재 추구하는 가치가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사회가 점차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 평가시에 입학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위주의 평가요소만을 반영한다면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은 소원해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을 평가하는 요소로 인권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4)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인권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 숨쉬는 권리이다. 인권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적인 인권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게 한다. 인권의식 및 인권존중의 풍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회복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인권관련 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비정부단체는 국가를 감시하고 국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가 더욱 요구된다. 대학 인권교육과 관련된 단체를 만들 경우에 단체의 계속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도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인권교육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

1) 인권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지정 권고

본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비율을 보면 조사응답 대학의 57%가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인권 관련 교과목 수를 보면 6.22개에 이른다. 회신하지 않은 58개 대학을 위 통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 대학 중 50%는 인권관련 과목을 한 과목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게다가 위 통계를 작성하면서 직업전문 대학이나 원격 대학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인권관련 교과목이 한과목도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전체 대학의 과반수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관련 교과목 수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고르게 개설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인권강좌의 확대에 있어서 교양(98%), 전공(8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인권과목을 교양과

목 혹은 전공과목 내에서의 확대, 교양필수 과목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게다가 학생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권강의를 듣고 난 후 인권의식 향상 등 효과 면에 있어서도 응답자 중 98%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권의식 향상이나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의 통계에 서처럼 대학 내에 인권관련 교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게다가 인권과 관련한 교과목의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과 인권관련 교과목에 대한 대학 자체에서의 관심이 낮다는 데 기인한다. 대학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률이 높은 학과 및 과목개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가 대학을 지식적 측면의 전문가 양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점과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대학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은 사회에 바로 적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들을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하고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 총괄하고 있는 기구로서 대학의 인권교육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경찰, 군인, 의료, 복지, 교육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인권과 전공을 연관지어 이를 전공필수과목의 형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지정권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권관련 자료 정리 및 교재 개발

인권과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조사에서는 인권 강의에 효과적인 강의방법으로 관련 동영상 시청이 22.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강의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은 다음으로 관련인물 초청강의, 팀프로젝트 발표, 현장학습, 세미나식 강의 등의 순서로 인권강의에 효과적인 강의방법을 들었다. 교수들의 경우에는 강의를 중심으로 관련인물 초청을 통한 인권강의에 선호도가 높았다.

교재의 경우에는 전문서적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신문기사나 소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의 응답률은 38%에 불과하여 그리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는 결정례집을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다섯 개의 시선’과 같은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등 거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위의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보다는 동영상이나 관련인물 초청강의, 팀프로젝트 발표 등 강의와 혼합된 형식의 수업을 선호한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음성, 연기자의 감정, 생각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는 인권의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시각적인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때 많지 않고, 게다가 검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영화제를 연다거나, 혹은 인권관련 동영상 등을 제작·지원하는 형식으로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홍보하거나 인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제작한다거나, 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의를 하는 교·강사가 인권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취합하여 전달해 주거나, 토론회, 팀프로젝트 등 다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대학수준에 맞는 인권교재 개발, 범죄와 인권, 소수자와 인권,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 특화된 주제에 대한 인권교재 개발, 인권관련 법규 모음집 제작 및 배포도 대학의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인권교육일반, 기본권,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아울러 추진되었으면 한다.

3) 인권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권교육자들의 모임(HRE)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 기관과 같은 공식, 비공식 교육공간에서의 인권교육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연방 혹은 교육정책, 기준, 과정, 학제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장려하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HRE는 세미나를 통해서 미국 내 인권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인권교육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인권배움, 활동가와 전문가 훈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기술을 통한 공동체 모임을 지원하는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인권교육에 한정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 혹은 재정지원을 통한 인권교육 중심의 기구를 만들고 활성화하면 전체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 나아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여 대학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인사들과 함께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을 모아서 강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강화노력도 인권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및 인권강사 양성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는 매우 미흡하다. 이는 단순히 대학교육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서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강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시점에서 인권이 갖는 위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몇몇 발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전체에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장하고 권장하면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권관련 문제들보다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홍보는 다소 부

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는 정부와는 독립한 기구로서 정부에 대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확산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해 인권과 관련한 전문 강사 양성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인권관련 교과목 교·강사들을 활용하여 조충고생,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
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문

임재홍 · 나달숙 · 조난심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임재홍(방송통신대 법학과)

1. 대학의 위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 내지 구조개혁이 더 이상 낮설지 않게 되었다. 개별 대학에서는 학과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대학평가, 대기업의 대학인수, 학문과 지식의 자본 종속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5년 5.31교육개혁안이 나온 이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쟁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을 산업으로 대학을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은 취업을 위한 직업양성소로 전락하고, 학문과 지식생산은 돈벌이가 되는 경영, 경제, 금융, 공학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자본논리에 종속된 일부 국가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경제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전세계적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을 기업간 경쟁의 수단으로 보게 되면,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을 산업화하려는 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감소(사무자동화, 로봇산업의 상용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등)가 대학변화의 동기가 되고 있다.

II. 대학의 위기와 인권침해

이로부터 고전적 대학의 위기가 발생했고, 대학구성원들의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의 최종 귀결은 고등교육의 경비를 학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고등교육에 진출한 자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로서 고등교육은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부정되고 사유재가 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을 사유재로 보는 시각은 대학을 이기적인 욕망 추구하고 실현의 장으로 변질시켰고 이로부터 각종 반인권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하여 바뀐 영국의 대학 모습은 아주 우울하다. 스완지대학 연구진과 영국학생연합(NUS) 웨일스 지부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대학생 섹스 워크 프로젝트(Student Sex Work Project)’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대학생 20명 중 1명은 성매매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영국 대학생 중 약 4분의 1은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고려한 적이 있고, 40%는 졸업할 때 학자금 부채를 줄이고 싶으며, 45%는 대출 상환금 체납을 피하고 싶다고 한다.

대학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류대학들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힘든 비(非)일류대학들은 또한 등록금의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보장이 축소되고 있다. 고등교육 공급 방식이 공공재 모델에서 벗어날수록 고등교육은 사회적 불평등 축소가 아니라 도리어 불평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이 최근 영국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011년 순식간에 등록금이 2~3배 폭등하면서 2012년 가을학기부터 영국인들의 대학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들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영리추구 고등교육을 인정하는 정책들이 허용되고 다수의 영리형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대학들 중에서 가장 규모의 피닉스 대학에는 학부생 약 42만명에 대학원생은 7만 8000명이 재학 중이다(2009년 기준). 이 학교에는 17,000여명의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의 겸임 교수와 직원이 있는데, 정규직 교수는 285명 정도이다. 영리추구 대학에서 비정규의 임시 고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피닉스 대학의 연간 매출액은 40억 달러, 순수익은 5억 9800만 달러에 이른다 (2009년 기준). 영리대학의 학비는 평생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보다 5~6배, 주립대보다는 2배 이상 비싸다. 수입의 20~30%는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입학이 결정되면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과 대출을 알선해 준다. 하지만 비싼 학비와 마구잡이식으로 학생을 유치한 탓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대학보다 훨씬 높다. 그 결과 학생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 후 학자금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자율화정책으로 등록금이 폭등하고 국가 장학금제도가 사회운동으로 도입되었지만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는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다. 부실대학퇴출정책으로 인해 폐교된 대학들의 교원, 직원과 학생들의 인권보장이나 법적 보호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학특성화정책으로 인한 일방적 학과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 산업수요에 따른 학문 분야구조조정이 들어가면 또 많은 교원과 학생들의 권리침해가 야기될 것이다.

III.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인권보장(?)

이제 대학은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장이 되어 버렸다. 그만큼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가 남는다. 오늘날 유럽의 대학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실현을 고등교육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놓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하여 대학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일본의 대학은 학칙이나 각종 규정을 검토할 때 헌법의 위반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관행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上智大學의 경우 헌법을 근거로 현행 학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하는 모습이나, 컴퓨터 부정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헌법이나 형법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정을 제정하는 사례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인 日本大學은 헌법의 이념에 맞추어 대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人權侵害防止ガイドライン”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인권침해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률 앞의 평등, 사상·신조·양심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차별적 취급, 프라이버시의 침해, 취학·취업에 관한 기회균등이나 환경확보, 기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취급에 의하여 개인의 존엄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도 이 지침이 금지하는 인권침해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학행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럿거스대학의 경우 1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 이중 대학평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수대표(Faculty Representative) 2인과 학생대표(Student Representative) 1인이 참여한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의 하나인 코넬대의 경우에도 64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교수 대표 2인, 총학생회 대표 2인, 직원대표 1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참여형 대학자치구조를 취하고 있는 다수의 미국대학들이 학생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외에도 독일이나 영국의 대학에서도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국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은 대학의 구성원의 신분으로 대학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 받고 있다. 독일의 국립대학은 교원, 학생, 직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법상의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교원, 학생, 직원들은 참여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사단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자치행정에의 참여가 법적 권리로 보장된다. 영국의 대학들도 교원과 학생은 물론이요 동문과 지역사회의 인사들까지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생들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운영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또한 1992년 이후에 대학의 지위를 획득한 대학에 있어서도 비록 학생들이 법적으로 대학의 구성원의 지위를 갖지는 못하지만 법률에 의해 이사회에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비민주적인 학칙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학생이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학내·외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승인 혹은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대학교 학칙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활동을 제한하는 국공립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학생활동 제한의 범위와 한계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공립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대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있는 변화를 시도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지난 2010년 안민석 의원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학칙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학의 92.4%에 이르는 183개 대학이 간행물 발행·배포 때 학교 쪽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칙을 갖고 있었다.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대학도 162곳(81.8%)이나 됐다.

학칙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즉 학칙위반을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징계를 당하는 경우이다.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Ⅳ. 인권보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인권교육의 법제화

대학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대학의 규모나 대학이 배출한 인력들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볼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증분석을 보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분명 의미를 갖는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교육이 인권단체나 인권에 관심 있는 몇몇 연구자에 의한 노력만으로는 너무나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제화의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인권교육의 필수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나아가서 공식적인 제도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인권교육을 필수로 만드는 규범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했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안 제4조),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 이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인권교육의 목적 및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고등교육법」에서 인권교육을 필수 커리큘럼으로 하는 법개정도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나달숙(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1. 서

국제적으로 인권교육은 하나의 권리로서 정립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인권교육은 여전히 교육의 일부로서 인식되고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여전히 독립된 인권교과가 아닌 교과서내에서 일부 단원에 제시하거나 단원의 일부로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실태는 발제문에서 제시했듯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센터를 별도로 두면서 인권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리는 듯한 아쉬움이 상존해 있고, 인권교육의 갈길 재촉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을 모색한 본 연구 발제문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2. 인권교육이란?

○ 인권교육의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
- 1994년 유엔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UNDHRE)은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간의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
- 2004년 유엔은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전파, 정보전달과 관련된 노력으로 정의, 그리고 인권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형성은 ①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②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의식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것, ③ 모든 국민과 원주민, 상이한 인종, 국가, 민족, 종교, 언어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양성평등, 우애를 증진시키는 것, ④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평화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 ⑥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고 제시
-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인권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형성까지 뿐 아니라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까지를 의미

○ 인권교육의 필요성

-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인권존중과 인권침해로부터 인권을 회복하는 일은 체계적인 인권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권존중 의식의 부재와 인권에 대한 무지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의 보호는 국내의 헌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구되지만 헌법 너머의 인간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3. 국제적 차원의 인권교육(유엔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 고등교육기관의 인권교육

○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 행동계획은 2005년 7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 초등 및 중등교육체계 내에서 인권교육 통합에 중점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

○ 유엔이 제시하는 고등교육 내의 인권교육 증진 행동

- **고등교육이란** 권한이 있는 국가당국으로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대하여 제공되는 중등과정 이후에서의 모든 연구, 훈련, 조사연구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정의, 이러한 고등교육 영역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일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및 의료와 법률 종사자의 훈련과 자격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될 수 있음

- 추진전략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요구, 책임성, 모든 정부의 재정적 지원 사항, 교육

기관은 핵심적 기능(조사연구, 교육, 지역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평화 구축, 인권 수호 및 민주적 가치 등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도덕적 시민을 교육해야 할 사회적 책임, 빈곤퇴치 및 차별철폐, 분쟁 후 재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다문화의 이해 등과 같은 현재 인권쟁점이 직면할 수 있는 지구적 지식(Global knowledge)을 생성해야 할 책임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사항으로 교육이 “교과과정의 내용 뿐 아니라 교육적 과정, 교육학적(pedagogical) 방법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내의 인권교육을 ①“교육을 통한 인권”이란 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 등을 포함한 모든 학습 요소와 과정 등은 인권에 대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장할 것, ②“교육에서의 인권”이란 고등교육체계 안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 존중과 권리실천을 보장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

- 고등교육체계에 인권교육 정책의 입안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한 사항

①고등교육체계내의 인권 및 특정 인권교육 포함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을 개발할 것

교육법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인권교육에 관한 개별 법률을 채택할 것
모든 법률이 인권교육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입법에서 인권원칙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인권교육정책은 인권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기반할 것을 보장할 것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대학문화와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개발할 것

평등, 차별금지, 존중, 존엄성, 품위, 공정성, 투명성 등의 인권원칙을 존중하는 교원의 채용, 심사, 보상, 징계 및 승진 등을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침을 수립할 것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정책을 수립할 것. 채용, 고용, 훈련 및 승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견 철폐 정책을 검토할 것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등교육보장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능력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취약집단에게 접근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할 것

관련 전문 직종에 대한 국가 자격 혹은 인증 기준을 마련할 때 인권훈련을 기준에 포함시킬 것

② 관련 정책 간의 응집성, 연관성 및 상승효과(시너지)를 보장할 것

국가고등교육계획 : 전국민교육(Education For All)을 위한 국가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10년(2005-2014)의 국가정책 수립 및 통합적 교육정책등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

국가인권계획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 국가빈곤퇴치전략 : 및 기타 개발 계획 등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

③ 교원을 위한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인권교육 훈련정책을 채택할 것

강사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훈련(Training for trainers), 교원에 대한 사전교육(Pre-service), 현직훈련(in-service) 등

사전교육, 현직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교원훈련정책 및 프로그램에 학생과 교사의 권리, 책임, 참여 등에 관한 정보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활동을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

인권교육을 교육직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자격부여 및 경력개발 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의 인권훈련활동의 자격부여 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검토할 것
인권훈련 프로그램 및 이행 평가 기준 및 표준 개발.

④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의무 이행

교육권과 인권교육 관련 국제조약 비준 촉구할 것

유엔 각종 조약기구(아동권리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모니터링기구, 유엔 특별절차(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등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에 인권교육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것

위에서 언급한 국가보고서 준비시 비정부기구 기타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

국제모니터링기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공지하고 이행할 것
 관련 정책의 이행조치를 개발하고 채택할 것. 효율적인 교육정책 개발 및 개혁
 은 명확한 정책공약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이행전략이 요구되는 것. 이러한 이행
 전략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방법, 메커니즘, 책임 또는 자원과 관련된 사항 등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이러한 이행전략은 인
 권교육 정책의 일관성, 모니터링,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4. 국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 대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실태는 발제문에서 제시했듯이 회신대학 307개 중 174개 학교에서(57%)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학계열, 사회계열, 교양에서의 인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권교과목 성격별과 인권관련교과목 성격별 인권과목 개설은 전공선택이 각각 53%, 전공필수가 각각 8%, 8% 교양선택이 각각 36%, 37% 교양필수가 각각 2%, 2%로 나타나고 있어 학문과 진로의 성격상 교육/사범계열이나 법학, 사회, 예체능, 의약/간호계열에서의 인권과목을 전공필수로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의 진로가 예정된 전공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전공과 관련해 더 세부적으로 상세한 인권교과목을 개설할 필요
- 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인권네트워크 확대와 인권교육활성화 증대
- 인권교재(교과서적 수준) 개발과 바로 활용가능한 인권자료 제공
- 전문 인권강사 양성과 지역 인권단체 지원을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
- 다양한 인권교육훈련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연구가 충실하게 수행되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대학들에서 불거진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그 동안 대학에서 인권/인권교육 문제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인권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때에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조사 대상 인권교과목을 한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주 이상 교육 내용은 ‘인권교과목’으로 분류하고, 2주 내외의 교육 내용은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쪽에 제기된 [인권 관련 교과목 분류] ‘가~다’는 적절하다고 보아지는데, 강의 명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과연 인권 관련 교과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의계획서를 분석 할 때에 소위 ‘인권교육 핵심 내용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향후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니다. 다시 말하여, 연구자들이 보는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의 핵심적인 내용과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를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대학들에서 2013-2014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보면 개설 대학 비율이 14% 증가되었으며, 교과목 수는 558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수준에서의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만큼 현대사회에서 인권 관련 과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연구와 같은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해당 대학교의 인권 존중 상태가 한국의 전반적인 상태보다 나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대학 내의 인권 존중 상태도 한국 사회 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인권 관련 과목 교·강사 대상의 설문은 매우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학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의 개설과 함께 재정적 혹은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설문지라는 연구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의 조사 내용과 함께 인권교육 관련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국내의 대학 혹은 대학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시민 단체 등의 사례를 심층 분석해 보았으면 좀 더 풍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연구가 대학에서 인권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교양 측면의 인권 과목 개설 확대, 전공 측면의 인권 과목 개설 확대, 인권 관련 교과목 운영 지원, 인권센터 건립 및 활성화를 통한 인권 중심 대학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다만, 대학들이 이러한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평가에서 특색 사업 등 항목이 있다면 예시적으로 제시하거나, 인권 교육과 직업 정보 등을 연계시켜 자발적인 동기화를 모색하는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대학의 인권센터 건립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센터 운영도 필요하고,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특별한 인권 사안이나 영역에 대해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센터- 예를 들어, 다문화 인권 센터 등- 운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정부 및 기업 등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제안으로는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의무화,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인권 친화적 대학 교육정책 추진,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은 실제로 해당 부처를 적시하지 않는 한 실행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주로 교육부의 소관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학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어느 부처가 어떤 측면에서 연관되는지를 토대로 좀 더 실제적인 제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 제언은 자칫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로 인권관련 교과목 필수 과목 지정 권고, 인권 관련 자료 정리 및 교재 개발, 인권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인권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인권 강사 양성을 제안하고 있다. 모두 타당하고 필요한 일이며, 일정 부분 국가인권위에서 추진하기도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대학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권/인권교육 연구 및 연구자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독립된 교과목으로 가르칠만한 학적인 기반이 성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강화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권 관련 부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인권교육 관련 연구 지원과 연구자들을 양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국내의 인권/인권교육 학회 행사는 물론 국제 세미나 등을 지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 인 쇄 | 2015년 6월

| 발 행 | 2015년 6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57 | F A X | (02) 2125-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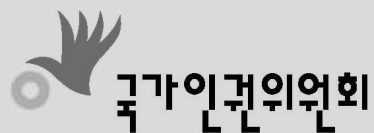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케이웰퍼니시

| 전 화 | 070-8654-4215 | F A X | (02) 6442-5773

| ISBN | 978-89-6114-421-6 9337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
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번경, 복제, 배
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10층 인권교육기획과
전화번호 : 02-2125-9853 /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인권교육센터 : edu.humanrights.go.kr

부산인권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 051-710-9713
광주인권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주)아모레퍼시픽 5층	● 062-710-9710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 053-212-7002
대전인권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서구 탄방동 649번지) KT탄방타워 13층	● 042-472-9038